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55

발의연월일: 2020. 7. 31.

발 의 자 : 맹성규·박상혁·이성만

강민정 · 한병도 · 김영배

이은주 · 황운하 · 양정숙

김철민 · 배진교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 안전 등 동물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물 소유자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피학대 동물을 동물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반환하도록 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일정 기간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격리하여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

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동물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학대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제20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를 "제20조의2, 제21조"로, "제2호 및 제3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에"를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기간을 정하여"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소유자의 동물
- 1.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기간
-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제한받는 기간
- 3. 그 밖에 피학대 동물의 생명,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 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 소유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동물의 소유권 제한)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동물 소유권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수 있다.

- 1.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혐의 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 2. 제1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동물의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에 대한 반복적인 학대의 위험 방지 등 피학대 동물의 생명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대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소유권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③ 학대행위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동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 <u>제21조</u> , 제29	<u>제20</u> 조의2, 제 <u>21조</u> -
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	
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	
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	
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	
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	
며, <u>제2호 및 제3호에</u> 해당하는	<u>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u>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	
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소유자의 동

- ② (생 략)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u>농림축산식</u>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물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u>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u>	
1.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기간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권을 제한받는 기간	
3. 그 밖에 피학대 동물의 생	
명,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u> </u>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세10소(중물의 반환 등) ①	
<u>다만, 동물 소유자</u>	
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	
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1. · 2.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동물의 소유권 제한)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
위에서 동물 소유권 제한의 선
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

 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 2. 제1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동물의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에 대한 반복적인 학대의 위험 방지등 피학대 동물의 생명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대행위자의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③ 학대행위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 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동물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